

제296회 정례회  
2010. 12. 14(화)

# 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  
행정문화위원회

「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2010. 12. 14(화)

행정문화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- 나. 제출일자 : 2010년 11월 12일
- 다. 회부일자 : 2010년 11월 19일
- 라. 상정일자 : 2010년 12월 6일

(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)

### 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윤영현)

### 가. 제안이유

- 수입증지 구입대금 납부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납부 근거를 신설하고,
- 「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」 개정(2010.9.17)에 따라 용어와 수수료를 동일하게 개정하고,
-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등이 개정(2009.5.8)되면서 도지사에서 시장·군수로 변경된 비디오물 제작업·배급업 신고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수입증지 구입대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근거 신설 (안 제2 조제3항)
-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(대통령령)과 동일하게 개정 (별표2)
  - 화재증명원 발급신청 : 1통 600원 → 1건 800원
  -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: 1건 500원 → 1건 800원
  -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: 1건 3,000원 → 1건 800원
  -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: 1건 20,000원 → 1건 4,000원
  -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 : 계속 → 갱신 또는 기간연장
  - 전기공사업의 등록증(등록수첩) 재교부 신청  
→ 전기공사업의 등록증(등록수첩) 재발급 신청
- 도지사 신고대상에서 시장·군수 신고(신청)대상으로 변경된 수수료 징수근거 삭제 (별표2)
  - 종합게임장업 등록(지정) 신청 : 1건 20,000원
  -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 : 1건 20,000원
  -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 변경신고 : 1건 10,000원

## 3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문화전문위원 : 장용대)

금번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

징수기준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」 개정(2010.9.17)에 따라 용어와 수수료료를 동일하게 개정하고,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등이 개정(2009.5.8)되면서 도지사에서 시장·군수로 변경된 비디오물 제작업·배급업 신고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

주요내용으로는

- 안 제2조제3항에서 수입증지 구입대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근거를 신설하고
- 별표 2의 수수료를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개정하고,
  - 화재증명원 발급신청 : 1통 600원 → 1건 800원
  -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: 1건 500원 → 1건 800원
  -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: 1건 3,000원 → 1건 800원
  -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: 1건 20,000원 → 1건 4,000원
  -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 : 계속 → 갱신 또는 기간연장
  - 전기공사업의 등록증(등록수첩) 재교부 신청  
→ 전기공사업의 등록증(등록수첩) 재발급 신청
- 별표 2의 도지사 신고대상에서 시장·군수 신고(신청)대상으로 변경된 수수료 징수근거를 삭제하는 것임.
  - 종합게임장업 등록(지정) 신청 : 1건 20,000원
  -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 : 1건 20,000원
  -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 변경신고 : 1건 10,000원

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 구입대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근거를 신설하고,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수수료를 변경하고 시장·군수 신고대상으로 변경된 수수료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군수”를 “시장, 군수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충청북도 수입증지 구입대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신청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.

#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p>제3조(징수방법) 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<br/>제증명 사무를 <u>군수가</u> 위임받아<br/>(내부위임을 제외 함) 처리할 때에는<br/>당해 시·군의 수입증지로서 징수<br/>한다.</p> <p>〈<u>신 설</u>〉</p> | <p>제3조(징수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br/>----- <u>시장, 군수가</u>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/p> <p>③ <u>충청북도 수입증지 구입대금은<br/>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<br/>있다.</u></p> |

## [별표 2]

##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(제2조 관련)

(단위 : 원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준 | 금 액    | 비 고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|---|
| <b>1. 증명</b>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|   |
| 가. 회계에 관한 증명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|   |
| 1) 거래액(물품공급실적) 증명                   | 1통 | 300    |   |
| 2) 하자보증금 납부 증명                      | 1통 | 300    |   |
| 3) 공사준공,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   | 1통 | 300    |   |
| 4) 실적증명 (공사, 물품, 용역)                | 1통 | 300    |   |
| 나. 기타 제증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|   |
| 1) 화재증명원 발급 신청                      | 1건 | 800    |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규정 (대통령령),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 제52조 |
| 2) 원자재소요량 증명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|   |
| 가) 가소요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통 | 3,500  |   |
| 나) 확정소요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통 | 1,200  |   |
| 3) 기타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           | 1통 | 300    |   |
| <b>2. 인가, 허가, 신고, 신청, 등록 시설확인 등</b> |    |        |   |
| 가. 일반행정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|   |
| 1)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|   |
| 가) 신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 | 5,000  |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규정 (대통령령)                    |
| 나) 갱신 또는 기간연장                       | 1건 | 3,000  |   |
| 2) 인·허가, 등록 지정 등의 대장 열람             | 1건 | 350    |   |
| 3) 기타 각종 인가, 허가,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      | 1건 | 100    |   |
| 나.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|   |
| 1)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신고 및 변경신청      | 1건 | 1,000  | 전기사업법 제62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) 석유판매업(일반·용제대리점) 등록신청             | 1건 | 30,000 |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1조, 규칙 제12조                      |
| 3) 석유판매업(부생연료유판매소) 등록신청             | 1건 | 20,000 |   |



(단위 : 원)

| 구 분   | 기준   | 금 액  | 비 고   |
|---|--|--|---|
| 4) 승강기보수업 등록신청  | 1건   | 50,000   |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 18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) 승강기보수업 변경등록 신청   | 1건   | 20,000   |   |
| 6)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 | 1건   | 4,000  |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장수 규정 (대통령령)                  |
| 7) 전기공사업의 등록신청  | 1건   | 40,000   | 전기공사업법 제4조, 제7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)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  | 1건   | 30,000   |   |
| 9) 전기공사업의 승계(양수·상속·합병) 신고<br>가) 양도·양수 또는 법인 합병 신고<br>나) 상속 신고   | 1건<br>1건   | 30,000<br>5,000  |   |
| 10) 전기공사업의 등록증(등록수첩) 재발급 신청<br>가) 승계(양수·상속·합병) 신고<br>나)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란의 부족에 따른 재교부<br>※ (8), (9)는 공사업자단체가 현금으로 징수  | 1건<br>1건   | 5,000<br>5,000   |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장수 규정 (대통령령),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 |
| 11) 전력시설물의 설계·공사감리업(등록·양도·양수·합병) 신청 등<br>가) 종합 설계업 등록 신청<br>나) 종합 설계업 양도·양수 또는 합병신고<br>다) 전문1종 설계업 등록 신청<br>라) 전문1종 설계업 양도·양수 또는 합병신고<br>마) 전문2종 설계업 등록 신청<br>바) 전문2종 설계업 양도·양수 또는 합병신고<br>사) 종합 감리업 등록 신청<br>아) 종합 감리업 양도·양수 또는 합병신고<br>자) 전문 감리업 등록 신청<br>차) 전문 감리업 양도·양수 또는 합병신고 | 1건<br>1건<br>1건<br>1건<br>1건<br>1건<br>1건<br>1건<br>1건<br>1건 | 50,000<br>45,000<br>30,000<br>25,000<br>20,000<br>15,000<br>50,000<br>45,000<br>30,000<br>25,000 |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2) 전력시설물의 설계·공사감리업<br>가) 변경등록(상호·소재지·대표자·기술인력) 신고<br>나) 등록증 재발급  | 1건<br>1건   | 5,000<br>5,000   |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장수 규정 (대통령령)                  |
| 다. 건설관계   |  |  |   |
| 1) 건설기계저당권 설정등록 및 이전등록 신청   | 1건   | 1,200  |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, 제4조, 제6조              |
| 2) 건설기계저당권 변경 또는 말소 신청  | 1건   | 1,200  |   |
| 라. 보건사회위생관계   |  |  |   |
| 1)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교부신청   | 1매   | 50   |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20조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) 종합병원 개설허가  | 1건   | 100,000  |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장수 규정 (대통령령)                  |
| 3)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 개설허가  | 1건   | 100,000  |   |

(단위 : 원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준 | 금 액     |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4) 종합병원 개설 변경허가                      | 1건 | 40,000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)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 개설 변경허가      | 1건 | 40,000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마. 문화 공보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) 음반·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음반·음악영상물 배급업 신고   | 1건 | 20,000  |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, 제21조       |
| 2) 음반·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음반·음악영상물 배급업 변경신고 | 1건 | 10,000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바. 체육시설업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) 골프장, 스키장업 사업계획 승인                 | 1건 | 200,000 |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, 제19조  |
| 2) 골프장,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              | 1건 | 60,000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) 골프장, 스키장업 등록신청                    | 1건 | 100,000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) 골프장,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                | 1건 | 40,000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)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신청              | 1건 | 100,000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)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          | 1건 | 40,000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)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등록신청                   | 1건 | 60,000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)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                | 1건 | 20,000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. 자격시험 관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)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교부신청              | 1건 | 5,000   |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제 6조      |
| 2)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                 | 1건 | 800     |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장수 규정 (대통령령)   |
| 3)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                 | 1건 | 800     |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장수 규정 (대통령령)   |
| 아. 교통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)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(신규·변경) 신고            | 1대 | 1,400   | 화물자동차운수업법시행규칙 제48조, 제50조, 제52조 |
| 2)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허가 신청 또는 임대허가 신청   | 1대 | 1,400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자. 광역단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관련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) 비행선 이용 허가신청                       | 1대 | 400,000 |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2              |

(단위 : 원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| 기준 | 금 액    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|-----|
| 2) 비행기·선박 양측면 허가신청       | 1대 | 10,000  |     |
| 3) 사업용 노선버스 양측면 허가신청     | 1대 | 2,000   |     |
| 4) 열차·전동차 양 측면 신고신청      | 1량 | 2,000   |     |
| 5) 비행선 이용 광고내용 변경허가      | 1대 | 200,000 |     |
| 6) 비행기·선박 이용 광고내용 변경허가   | 1대 | 5,000   |     |
| 7) 사업용 노선버스 이용 광고내용 변경허가 | 1대 | 1,000   |     |
| 8) 열차·전동차 이용 광고내용 변경신고   | 1량 | 1,000   |     |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[대통령령, '10.9.17 개정]

[별표]

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(제2조 관련)

| 종 류  | 금 액        |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(갱신 또는 기간연장) 신청 수수료       | 1건당 3,000원 | ‘10.9.17.개정<br>(연장 → 갱신 또는 기간연장) |
| 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수수료 | 1건당 800원   | ‘10.9.17.신설                      |
| 「소방기본법」 제29조에 따른 화재조사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(화재증명원)의 발급 수수료           | 1건당 800원   | "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            | 1건당 4,000원 | "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「의료법」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800원   | 10.9.17.신설                       |
| 「전기공사업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| 1건당 5,000원 | "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(감리업)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        | 1건당 5,000원 | "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□ 전자정부법

제14조(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)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, 수수료, 과태료, 과징금, 범칙금, 벌금, 과료 등을 현금, 수입인지, 수입증지,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,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## □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

제57조(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) ①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.  
<개정 2009.5.8>

## □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[소방방재청훈령 제181호]

제52조(화재증명원의 발급) ① 서장은 별지 제11-1호 서식으로 민원인이 화재증명원의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화재증명원발급 대장에 기록을 한 후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의한 화재증명원을 발급하여야 하며, 관공서, 공공기관·단체, 보험사에서 공문으로 발급을 요청시 공용 발급할 수 있다. (2006.12.27. 본항개정, 2009.7. 7. 본항개정)

② ~ ⑤ (생략)